

보도설명자료

计引 医终端 对故则于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3. 1. 16.(월)		
담당 부서	금융산업국	책임자	과 장 신상훈(02-2100-2960)		
	보험과	담당자	사무관 권진웅(02-2100-2945)		

보험업법 개정안(소위 삼성생명법) 관련 국회 질의 답변내용에 대한 입장

- 머니투데이 1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□ 머니투데이는 1.16일 「정부 "삼성생명법, 증시·소액주주에 중대 영향", 사실상 반대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"그동안 금융당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유보 해왔지만 **최근 사실상 반대**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"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금융위원회가	보험업법	개정안(삼성	생명법)과	관련하여	정무위원회
위원의 질의에	답변한 니	H용은 아래와	같습니다.		

- □ 개정안은 **자산·부채 평가**에 대한 **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**에 따라 **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도 시가평가를 적용**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
- □ 다만, 개정안은 보험회사, 보험계약자,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.

-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
-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, 향후 국회 논의시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음
- □ 또한, 주가는 **기업의 내재가치에 따라 변동**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단·장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
 - 다만, 매각시 **주가변동성 발생** 및 **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**하므로 국회 논의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
- □ 이와 관련하여,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(삼성생명법)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

